##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65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박용갑・이기헌・한민수

복기왕 · 김태년 · 조정식

조인철 · 서미화 · 황명선

손명수 · 박정현 · 정준호

염태영 · 장종태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 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 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 법률 제 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 및 지급실태, 제3항"을 ", 지급실태,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및 제3항"으로, "3년마다"를 "2년마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폭력 피해 실태 및 조치현황 조사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장 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 ~ ③ (생	과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4
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	<u>,</u> 지급실태, 사회
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u>3년마</u>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및 제
<u>다</u>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u>3</u> কু
	<u>2</u>
	년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